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보 도 자 료	(배포) 2018. 10. 8(월)
즉시 사용		
비고	* 공동배포 : 과기정통부, 산업부, 중기벤처부	
총괄	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팀	팀장 임홍기, 사무관 김병석, 김정훈 (044-200-2446, 2449, 2415)
정보통신 융합법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, 인터넷제도혁신과	과장 홍진배, 사무관 조경래, 김광의 (02-2110-2830, 2821, 2834)
산업융합 촉진법	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	과장 김대자, 사무관 김종락 (044-203-4510, 4515)
지역특구법	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	과장 성녹영, 사무관 이범선 (042-481-1695, 1609)

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·서비스와 더욱 가까워 집니다

- 정보통신융합법·산업융합촉진법·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-

□ 정부는 **10월 8일(월)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**에서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 중 **정보통신융합법**, **산업융합촉진법**, **지역특구법** 등 3법 **공포안을 의결**했다고 밝혔습니다.

*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

○ 규제혁신 5법은 **신기술·신산업의 빠른 변화**를 **현재의 규제체계**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**구조적 문제**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으로서, 향후 **혁신성장에 크게 기여**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1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□ 규제혁신 5법은 **신기술·신산업**의 **육성**과 **국민의 생명·안전·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**를 **균형 있게 추구**합니다.

□ 우선, 새로운 융합 제품·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❶**규제 신속확인**, ❷**실증을 위한 특례**, ❸**임시허가**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.

❶ 규제 신속확인

-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 **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**와 **규제의 구체적인 내용** 등에 대해 **언제든지 문의**하고, **30일 이내에 안내**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- 만약,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**회신이 없을 경우**에는 **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**되어 기업들은 자유롭게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❷ 실증을 위한 특례

-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,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**일정한 조건*** 하에서 **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**가 **가능**해 집니다.

* 현실과 유사한 시장상황 하에서 구역·기간·규모 등을 일정 범위로 한정

- 이를 위해,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**민관합동 심의위원회**(위원장 : 관계부처 장관) **심의**를 거쳐 특례(2년 이내, 1회 연장 가능)를 부여받게 됩니다.

- 또한, 정부가 **실증특례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실증 결과를 바탕**으로 법령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**관련 규정을 정비**하도록 하여 입법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완화되도록 했습니다.

❸ 임시허가

- **시장 출시가 가능**한 **혁신성과 안전성을 지닌** 신제품·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,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**일정한 조건하**에서 **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**해주는 제도도 도입됩니다.

- 심의절차와 유효기간은 실증을 위한 특례와 동일하며, **임시허가 기간 내**에 관계부처는 **반드시 관련 법령을 정비**해야 합니다.

- 특히, **산업융합촉진법**과 **지역특구법**에서는 **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**되도록 하여 임시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는 **안심하고 사업을 지속**할 수 있습니다.

□ 아울러, 규제혁신 5법은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**두텁게 보호**하기 위한 **다양한 안전장치**를 갖추고 있습니다.

○ 우선,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심사 시 **국민의 생명·안전·환경** 등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따져보고, **우려가 있는 경우**에는 **규제특례를 제한**하도록 했습니다.

○ 실증 테스트 **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**하여 **문제가 예상**되거나, **실제 발생**할 경우 **즉시 규제특례를 취소**할 수 있습니다.

○ 또한, 사전에 **책임보험**을 가입토록 하고, 인적·물적 손해 발생 시에는 **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**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 **손해 배상책임**도 **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강화**했습니다.

○ **주요 선진국들**은 **규제 샌드박스**를 **소비자 보호와 안전**을 위해 **더욱 필요**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,

- 정부도 실증 테스트를 통해 신제품·서비스의 혁신성 검증 外에도 **모든 잠재위험 요인**들을 **점검**하여 **최적의 안전장치를 마련**하는 데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.

2. 규제혁신 5법 시행 시 기대효과

□ 규제혁신 5법에 포함된 규제 샌드박스는 **기업**과 **소비자**, **규제당국 모두**에게 **이로운**(win-win) 제도입니다.

❶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 제고

- 기업들은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도 실증 테스트가 가능하여 **글로벌 혁신경쟁**에서의 **우위 선점**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.

- 특히,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시행한 **영국의 사례***를 참조할 경우 동 제도는 **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리**하며,

* 1년간('16.6~'17.5) 실증 테스트 기업 42개사 중 39개사가 스타트업·중소기업에 해당

- 스타트업 등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대기업의 자원·인프라 등을 결합한 **새로운 형태의 상생협력 모델 창출**도 기대됩니다.

- 아울러, 기업들은 **규제**와 관련된 **불확실성**이 **크게 완화**되어 **유·무형**의 상당한 **비용절감 효과**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.

❷ 소비자 등 국민이 실질적 편익 향유

- 보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앞당겨짐에 따라 **소비자들**의 **선택권이 확대**되고, **편리성이 향상**됩니다.

- 또한, 신기술·신산업 분야에 대한 **일자리 창출 기회**가 **확대**되어 청년들의 구직난 완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예상됩니다.

❸ 정부의 정교한 규제체계 설계 가능

-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**실증 테스트 결과**를 바탕으로 **정교하고 스마트한 규제체계 설계**가 가능해 집니다.

- 이를 통해, 규제당국은 **신기술·신산업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**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장출시에 맞춰 **최적의 규제방안**을 **마련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3. 적용가능 사례(예시)

□ '16년 영국에서 **핀테크 활성화**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 도입한 이후 **주요 선진국들**은 **금융분야**를 **중심**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있으나,

※ 전 세계 20개국이 규제 샌드박스 이미 도입(11개국) 또는 도입 추진 중(9개국)
- ▸기존 도입 국가 : 영국, 싱가포르, 호주, 일본, 덴마크, 캐나다, 홍콩 등
- ▸도입 추진 중인 국가 : 미국, 스위스, 네덜란드, 두바이, 대만, 인도네시아 등

○ 최근 들어 **영국·호주·싱가폴·일본** 등에서 **에너지·로봇·자율주행차·드론** 등의 분야까지 적용범위를 **확대**하는 추세입니다.

□ **국내에서 적용가능한 사례의 예시***는 다음과 같습니다.

*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은 기업 신청과 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좌우

❶ 규제 신속확인

【사례①】 자율주행 스마트 농업기계



❖ (현황) 농지 外 일반도로 주행 가능여부와 주행 가능 시 보험가입 의무 여부 등 관련 규제 확인 필요

☞ 관계부처에 문의하면 해당부처 장관은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줌

【사례②】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(SW)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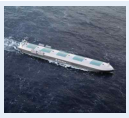


❖ (현황) 전자의무기록 보관이 가능한 의료기관 외 시설·장비에 클라우드가 해당되는지 관련 규제 확인 필요

☞ 관계부처에 문의하면 해당부처 장관은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줌

❷ 실증을 위한 특례

【사례③】 무인선



❖ (현황) 現 선박관련 법령은 선원의 승선을 가정하여 무인선 운항이 대부분 법에 저촉

☞ 현행 법령에도 불구, 새만금 등 일정 해역을 정하여 안전성 검증 등 테스트베드 운영

【사례④】 자율주행 버스



❖ (현황) 무인버스가 버스전용차선 이용 시 현행법에 저촉

☞ 일정 구역·기간을 한정해 現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

❸ 임시허가

【사례⑤】 스마트 화재예방 시스템



❖ (현황) 승인대상 소방용품을 열거적으로 제한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미승인 제품의 경우 시장진입에 한계

☞ 임시허가(승인)를 통해 한시적 시장출시를 허용하여 신기술 적용 소방용품 산업분야 활성화를 도모

【사례⑥】 지게차 구조물을 탑재한 새로운 형태의 트럭



❖ (현황) 차량 인허가를 위한 법적 정의 및 안전기준 등이 부재하여 출시 곤란

☞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, 관련 법령 개정 추진

4. 향후 계획

□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**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 TF를 통해** 하위법령 정비 등 **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**할 예정입니다.

○ 내년 1월 시행예정인 **정보통신융합법**과 **산업융합촉진법** 개정안과 내년 4월 시행예정인 **지역특구법**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**하위법령을** 준비하겠습니다.

○ 이 과정에서 각종 **행정 절차**가 **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·현장과 충분히 소통**하면서 제도를 **설계**하도록 하겠습니다.

○ 또한, 기업들이 **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이드북**을 제작·배포하고, **현장 설명회**도 적극 개최할 예정입니다.

□ 특히, 실제 시행과정에서 국민의 **생명·안전·환경** 등 **공익적 가치**가 **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고려**해 나가겠습니다.

※ (붙임) 1. 핵심 Q&A
2.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
3. 주요국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현황
4.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1년 시행 성과

붙임 1 **핵심 Q&A**

1.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가요?

□ 신기술·신산업 분야의 **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**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**기존 규제를 면제**하거나 **유예**시켜주는 제도입니다.

*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(sandbox)에서 유래

○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**다양한 아이디어**를 **펼칠 수 있을 것**으로 기대됩니다.

2. 정보통신융합법·산업융합촉진법·지역특구법이 비슷한데, 어느 법에 근거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야 하나요?

□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**해당 사업의 성격**이 중요합니다.

○ **정보통신융합 제품·서비스**의 경우 **정보통신융합법** 또는 **산업융합촉진법** 중 사업자의 **편의에 따라 선택**이 가능하며,

○ **정보통신융합 이외** 융합 제품·서비스의 경우에는 **산업융합촉진법**, **지역 특화 산업**은 **지역특구법**에 근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
□ 다만, 기업이 **잘못 신청한 경우**에도 **신청을 받은 부처**에서 해당 내용을 **소관부처에 이관**토록 하여 혼란을 방지할 계획입니다.

3.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?

□ **과기정통부**(정보통신융합법)·**산업부**(산업융합촉진법) 또는 **지자체**(지역특구법)에 **신청**하면, **심의위원회 심사**를 거쳐 결정됩니다.

< 규제 샌드박스 지정 절차(예시 : 과기정통부) >



4.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?

□ 신제품·서비스의 **혁신성**, **이용자 편익**, 국민의 **생명·건강·환경** 등 **공익적 가치**를 고려하여 **규제특례심의위원회**에서 결정합니다.

○ 심의위원회에는 **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**를 위해 **관계부처** 및 다양한 **민간 전문가**(절반 이상 포함) 등이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.

5.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가능한가요?

□ 신청 사업자는 **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하**의 **전문 분과위원회***에 참석하여 **자유롭게 의견을 제시**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

*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전 검토 기관

6. 다수 부처와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□ 과기정통부·산업부·지자체* 중 **관련성이 높은 부처**에 **신청 시** 해당 부처가 **모든 관련부처에 통보** 및 협조를 얻어 절차를 진행합니다.

* 시·도지사가 중기부장관에 신청 후 중기부장관이 관련부처 통보 및 절차 진행

7. 규제 샌드박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?

□ 동일한 신제품·서비스에 대해서도 **사업계획을 보완**하여 **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을 개선**하였을 경우에는 **재신청이 가능**합니다.

* 행정심판을 통한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도 가능

8. 인적·물적 피해 발생 시 소비자 구제 방법은?

□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가 **사전에 책임보험 가입** 또는 **별도의 배상 방안**을 **마련**해 손해 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

* 다만,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 면제

붙임 2 **3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**

1. 정보통신융합법·산업융합촉진법(과기정통부·산업통상자원부)

[1] 주요 내용

□ 새로운 융합 新제품·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❶규제 신속확인, ❷실증을 위한 규제특례, ❸임시허가 제도 신설

구분	실증·테스트 목적 (구역·기간·규모 등 제한)	시장출시 목적 (구역·규모 제한 정도 낮거나 없음)
규제 모호	① 규제 신속확인 제도 ○ 허가 필요여부,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○ 사업자 신청 → 과기정통부·산업부 장관 → 관계부처 30일 내 회신	
법령 공백·적용 부적합	②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○ 안전성 등을 시험·검증할 수 있도록 **규제 적용 배제** (2년 이내, 1회 연장가능) ○ 사업자 → 과기정통부·산업부 장관 → 규제특례심의위원회* 결정	③ 임시허가 ○ 시장출시를 위해 **2년 이내 임시허가** 부여(1회 연장 가능) ○ 사업자 → 과기정통부·산업부 장관 →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정
금지·불허		관련법령 제·개정 필요

* 규제특례심의위원회(관계부처 장관 위원장) : 국민의 생명·안전·환경·지역균형발전,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·임시허가 허용 여부를 심의

※ **신제품·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한 기존사업자와 갈등을 예방·조정하기 위해 갈등조정위원회 신설, 융합 옴부즈만 기능 강화(산업융합촉진법)**

[2] 향후 계획

□ **하위법령 정비**

○ 하위법령 개정안 **관계부처 협의·입법예고**(10~11월) → **법제처 심사**(11월) → **차관·국무회의** 심의·의결, **운영요령** 등 **제정**(12월)

□ **성과사례 발굴**

○ ICT 신산업 분야 **'규제샌드박스 적용과제' 발굴**을 위해 **ICT 유관협회, 스타트업포럼 등 참여**하는 TF 운영(10월~, 과기정통부)

○ 대한상의 등과 협조하여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**규제샌드박스 활용 수요조사**(10~11월, 산업통상자원부)

2. 지역특구법(중소벤처기업부)

[1] 주요 내용

□ 신기술·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'**한국형 규제샌드박스**'가 적용되는 '**규제자유특구**' 신설

○ 국가균형발전 목적을 감안, **신청가능 지역은 비수도권**으로 제한

○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'**규제자유특구위원회**'에서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특구 지정 등을 **심의·의결**

○ 지역의 창의성, 다양성, 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**「국가균형발전법」과의 연계**를 **강화**

□ **규제자유특구 지원 강화**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구축

○ 특구 내 사업자에게 기존 **규제에 대한 특례** 적용(201개)

○ 법령 미비 등 규제공백시에도 특구내에서 사업을 우선 허용하는 **규제 샌드박스(① 규제 신속확인, ② 실증특례, ③ 임시허가) 도입**

* 규제 신속확인 : 규제 해당여부 등을 30일 내에 회신
실증특례 : 법령 미비, 법령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험을 허용
임시허가 : 근거법령이 없거나 규제 적용이 맞지 않을 경우, 안전성이 확보된 신제품·서비스의 시장출시 허용

○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육성을 위해 **재정·세제 지원**

[2] 향후 계획

□ 하위법령 마련 등 **입법후속 조치**

○ 시행일('19.4)에 맞춰 **시행령, 시행규칙, 운영요령** 등 **제·개정**

○ **지자체 통합·순회 설명회**를 개최('18.11)하여 지자체의 수요를 파악하고, 가이드라인 및 운영방안을 제시

붙임 3 **주요국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현황**

◇ 전 세계 **20개국**이 규제 샌드박스 **旣 도입**(11개국)·**추진 중**(9개국)

* 旣 도입 : 영국, 싱가포르, 호주, 일본, 덴마크, 캐나다, 홍콩 등
추진 중 : 미국, 스위스, 네덜란드, 두바이, 대만, 인도네시아 등

○ **핀테크 활성화** 위해 **'16년 영국**에서 규제 샌드박스 **최초 도입** 이후 **주요국**도 **금융분야 중심**으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

□ 금융 규제 샌드박스 사례

○ **[영국]** FCA(금융규제 당국)이 혁신적 금융사업자 신청 심의

* 테스트 소비자 群한정,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, 사후평가 후 인가 결정

차수	신청 및 선정	주요 사업
1차('16년)	69개→18개	· 비행기 티켓 모바일 결제 후 기상이변 등으로 취소될 경우 새로운 비행기표를 즉시 제공하는 자동 클레임처리 상품
2차('17년上)	77개→24개	· 사용자의 운전 습관을 모니터링하고 자동차보험회사와 공유 → 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점수 앱 개발
3차('17년下)	61개→18개	·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상승에 미치는 모든 요소를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개발
4차('18년)	69개→29개	·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여 기업들이 부채 및 지분 증권, 암호 화폐 자산등을 관리하게 함

○ **[싱가포르]** MAS(통화청)이 핀테크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('16)

* 규제 완화 가능요건 14가지 제시 (이사회 구성, 현금 잔고, 재무적 건전성 등)

○ **[호주]** ASIC(증권위원회)가 도입('16) 후 면허 면제제도 실시

* 면허가 없는 스타트업 기업은 주어진 기간 내(6개월) 금융서비스 테스트 가능

□ 일반 규제 샌드박스 사례

○ **[일본]** 지역특구형 규제 샌드박스('17 도입)와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('18 도입)를 투 트랙으로 추진 중

* (지역특구형) 정부가 지역 특성별 전략거점을 선정하여 기업진출 유도
(프로젝트형) 사업자가 자유롭게 기간 등을 정하여 정부에 제안하고 평가좇가 인증

붙임 4 **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1년 시행 성과**

◇ 기업·시장의 **혁신 촉진**, **소비자 편익 향상**, **규제 효과성 제고** 등 전반적으로 **소기의 성과**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

* Regulatory sandbox lessons learned Report (FCA, '17.10)

1. 기업·시장의 혁신 촉진

□ **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부분의 기업**이 **본격적인 시장 출시** 착수

○ 실증 테스트를 완료한 기업 중 **90%**는 **시장출시 과정을 진행** 중이며, **40%는 외부 투자를 유치**하는 데 성공

□ **스타트업**과 **대기업간의 파트너십**을 통한 실증 테스트는 **혁신성·신속성·사업성 제고** 등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 창출

2. 소비자 등 국민의 편익 향상

□ **40여개 이상**의 다양한 **신제품·서비스**가 실증 테스트를 실시한 가운데, **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방향**으로 테스트가 진행

* 실증 테스트를 실시한 기업 중 1/3이 진행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모델 수정

□ **금융 소외계층** 등 상품·서비스 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**취약 계층**을 위한 **맞춤형 상품 출시**도 가능하게 된 성과

3. 규제의 효과성 제고

□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에서 **규제당국**과 **기업간의 소통·협력**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 출시에 맞춰 **안전한 보호장치**를 **완비**

□ 규제 샌드박스는 **스타트업·中企에 유리하게 작용**❶하였으며, **런던 外 지역**으로까지 **혁신적 제품·서비스 개발 촉진**❷에 긍정적 기여

❶ 1~2차 테스트 기업 42개사 중 39개사(92%)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
❷ 런던 外 지역 기업 비중(%) : (1차 테스트) 25 → (2차 테스트) 35